

의안번호	2219655
의 퇴 인	김선교의원
회 답 일	2026.7.21.
추계번호	26C324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 (의무복무기간)	- 공중보건의학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제1항) － (현행)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	의무규정
2	안 제11조 (보수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학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제1항) － (현행)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 (의무복무기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1조 (보수 등)	

2. 상세 사유

□ 의무복무기간(안 제7조)

- 개정안에 따라 공중보건의학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의 증감요인이 상존하나, 그 증감 방향과 규모를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추계 대상의 범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중, 현행법 제11조¹⁾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봉급, 진료수당, 전공수당가산 등)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동 개정안의 추계 대상에 해당하나,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연계 법률안²⁾에서 추계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됨
- (증감요인) 추가재정소요 대상 비용인 공중보건의의 보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상반된 요인이 상존함
 - (감소요인) 전체 입영 인원이 일정하고 의무분야 인력의 선발·배분 절차가 현행³⁾과 같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관련 법률안의 동시 의결로 우선선발 직역(의무장교·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규 충원이 증가하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잔여 인원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배치 현원이 줄어 보수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 (증가요인) 반면, 개정안은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지원 유인을 강화하려는 만큼, 의무분야 지원자와 공중보건의사 편입인원이 증가하여 배치 현원의 확대에 이어질 경우 보수 지급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보수 비용의 증감요인이 상존하고, 의무분야 지원자의 행태 변화에 따라 순효과가 달라지므로 현시점에 증감의 방향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②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

2)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9653호)은 의무분야 인력(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보수 등(안 제11조)

- 개정안에 따라 현재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경우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는 현행 군인 보수의 한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불하는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해당 보수액에서 현행 ‘군인 보수의 한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액을 차감한 차액임
- 이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개정안은 보수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현실점에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 현행법 제11조제1항⁴⁾은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⁵⁾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임
 - －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대위 1,320명, 중위 1,980명 대상) 인건비(월급, 정근수당, 정액수당, 명절휴가비 포함)로 936억원⁶⁾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수당은 각 배치기관의 운영비⁷⁾로 지급하고 있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5)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병원”이라 한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6)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월급(대위 3,123,500원, 중위 2,243,000원)에 1.034배를 적용하여 2026년 인건비를 산정하였음

7) 예시로, 2026년 예산을 기준으로 마산병원은 공중보건의사 7명에 대한 수당 8,400만원, 목포병원은 공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nabo.go.kr